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40982(본소), 2024다240999(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40982(본소), 2024다240999(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2나106659(본소), 2022나120747(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가단1263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의 소송수계인

1. B
2. D
3. E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의 소송수계인 C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윤기, 심준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김광수, 김용운, 배철욱

피고 1. G

2. H
3. I

4. J

5. K

판결 선고 2024. 12. 1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가단126313 판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2나106659(본소), 2022나120747(반소)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추가·변경되거나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F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F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F은,

1)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석불상 및 같은 목록 제3의 바항 기재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2)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법당을 인도하고,

3)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의 다항 기재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20. 10. 29.부터 2021. 10. 28.까지는 원고 B에게 월 45,622원의,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에게 각 월 30,414원의, 2021. 10. 29.부터 별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원고 B에게 월 50,802원의,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에게 각 월 33,86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의 라항 기재 물탱크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의 라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20. 10. 29.부터 2021. 10. 28.까지는 원고 B에게 월 581원의,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에게 각 월 387원의, 2021. 10. 29.부터 별지 목록 제2의 라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원고 B에게 월 647원의,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에게 각 월 431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의 마항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의 마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20. 10. 29.부터 2021. 10. 28.까지는 원고 B에게 월 16,853원의,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에게 각 월 11,235원의, 2021. 10. 29.부터 별지 목록 제2의 마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원고 B에게 월 18,767원의,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에게 각 월 12,511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의 피고(반소원고) F에 대한 별지 목록 제3의 바항 기재 화장실에 관한 주위적 본소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F의 원고(반소피고) C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F이 부담하고,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C이 부담한다.

N

이 유

1. 제2 내지 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 사찰 건물에 관한 망 A과 피고(반소원고) F 사이의 사용대차 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망 A과 피고(반소원고) F 사이에 묵시적인 사용대차 관계가 존재하였던 이상, 피고(반소원고) F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은 복멸되었고, 피고(반소원고) F이 증여를 점유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종교용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반소원고) F은 별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법당(이하 '㉔ 법당'이라 하고, 위 제3항에 기재된 나머지 5개 건물 또는 지상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부지를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없고, 피고(반소원고) F이 ㉔ 화장실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를 점유해 오기는 하였으나 그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를 위반하거나 자주점유 및 그 추정지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518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A의 상속인들로서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C(이하에서는 원고 C까지 통틀어 지칭할 때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 사찰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F 및 피고들(이하에서는 피고 F과 구별하기 위하여 '피고 G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있는 총 6개의 건물 또는 지상물 및 그 부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하였다.

우선 ① 석불상, ⑤ 비닐하우스에 관하여는 피고 F이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위 피고를 상대로 ① 석불상의 철거를 구함과 아울러 ⑤ 비닐하우스의 철거, 그 부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② 법당 및 ⑥ 화장실에 관하여는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 F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망 A, 망 M, N에게 1/3 지분씩 소유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망 M의 상속인들인 피고 G 등을 상대로 ② 법당 및 ⑥ 화장실 중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철거, 그 부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위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F을 상대로는 ② 법당 및 ⑥ 화장실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③ 단독주택, ④ 물탱크에 관하여는 주위적으로 피고 F이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위 피고를 상대로 ③ 단독주택 및 ④ 물탱크의 철거, 그 부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망 A, 망 M, N에게 1/3 지분씩 소유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 G 등을 상대로 ③ 단독주택 및 ④ 물탱크 중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철거, 그 부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위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F을 상대로는 ③ 단독주택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다).

2) 제1심은 ① 석불상, ③ 단독주택, ④ 물탱크, ⑤ 비닐하우스는 피고 F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② 법당 및 ⑥ 화장실은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다만, 원고들이 차임 상당액을 상속지분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것을 원고별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인용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피고 G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F만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 F을 상대로 제1심판결 중 청구 인용된 부분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하되, ⑥ 화장실에 한하여 기존의 인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⑥ 화장실이 피고 F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철거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한편, 피고 F은 원심에서 원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종교용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 G 등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됨으로써 원심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F의 원고 C에 대한 반소청구로 한정된다고 보고, ① 석불상, ③ 단독주택, ④ 물탱크, ⑤ 비닐하우스, ⑥ 화장실은 피고 F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나, ② 법당은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⑥ 화장실에 관한 본소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인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철거 청구는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피고 F의 원고 C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의

피고 G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② 법당, ③ 단독주택, ④ 물탱크, ⑥ 화장실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4개의 건물 또는 지상물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이 원고들 또는 피고 F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데 비하여, 원고들의 피고 G 등에 대한 청구는 위 4개의 건물 또는 지상물을 망 A, 망 M, N 3인이 1/3지분씩 공유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두 청구는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F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G 등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 모든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의 피고 G 등에 대한 청구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32542 판결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F에 대하여 ① 석불상의 철거, ② 법당의 인도, ③ 단독주택의 철거, 그 부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④ 물탱크의 철거, 그 부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⑤ 비닐하우스의 철거, 그 부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⑥ 화장실의 인도를 구하는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그 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이와 같이 피고 F에 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주관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피고 G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F의 원고 C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의 피고 F 패소 부분 중 ⑥ 화장실에 관한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F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에서 추가·변경되거나 제기된 피고 F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 F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F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G 등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노태악

대법관서경환

주심대법관신숙희

대법관노경필

별지